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2일, 허성무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허성무의원)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 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산업재편필요업종 선정 및 심층조사 실시 등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¹⁾이 산업재편필요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경제단체, 관련 기업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 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 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 <u>분석</u> 을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 ----- ----- ----- ----- ----- <u>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u>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

1) 의안원문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칭된 점을 반영하여, 이하 보고서 본문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통일

현행	개정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단체의 장, 관련 기업에게-----.

현행법 제8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경제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우선, 개정안은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이하 “사업재편필요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심층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기초조사는 산업연구원이 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업종(3단계, 소분류)별로 통계청, 한국은행 및 상장사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바탕

으로 생산, 출하, 재고, 가동률, 수출입현황 등을 분기별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개정안에 따라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의 사업구조를 파악하고 설비과잉, 수요둔화, 수입대체 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산업재편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적절한 구조혁신방안 및 권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8조제2항은 기초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필요업종을 바로 선정하도록 하는데, 현재 기초조사 내용 및 수준상 이를 바로 확정할 수 있는지, 심층조사를 거친 후 사업재편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8조제3항은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감산, 설비 감축, M&A 및 폐업계획 등 기업의 민감한 사업정보도 사업재편필요업종의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산업재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수집 필요성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법익 간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수준 및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8조제3항은 기초조사에 대해서도 요청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요청권한 및 협조 의무를 부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편권고 및 지역별 협의회 구성 등 사업재편제도 정비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업종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권고를 할 수 있으며(안 제8조의2 신설),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지역별로도 구성하고(안 제8조의3), 사업재편계획 승인기간을 공급안정 사업재편(제1호),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제3호) 유형에 대해서도 모두 5년으로 하며(안 제9조), 업무위탁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36조).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사업재편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 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 방안 마련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

현행	개정안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 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② (생략)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④ ~ ⑨ (생략)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 6. (생략) ② (생략)	----- ----산업별·지역별 선도기업, 산업·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1의2. 제8조의3-----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우선, 안 제8조의2는 사업재편필요업종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만 감산·감축하기에는 ‘최수의 딜레마’ 등 시장 메커니즘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권고 형식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구조혁신방안이나 권고의 내용을 실질적·구체적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법조문 상으로는 민간기업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제하거나 권고 미이행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업재편업종 기업에 대한 권고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질적으로는 감산·감축 등 개별 기업이 부담을 감수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구조혁신방안에서 이에 상응하여 사업재편 이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를 유도·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권고 규정은 다소 침익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율 대상의 성질·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조문 내 적정하게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구조혁신방안에서도 민간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 권고 규정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3(기존 제8조의2)은 현재 산업별로 구성된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지역별로도 나누어 구성하려는 것으로, 감산 등 사업재편논의를 전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단위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역별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회를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재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9조제3항은 모든 사업재편 계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함. 사업재편은 공급안정 사업재편(제1호), 미래 사업재편(제2호) 및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제3호)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법 제9조제3항은 미래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5년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안정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 사업재편 유형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는 중장기적·전략적 대응을 위한 미래 사업재편과 달리 공급안정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은 공급불안이나 지역산업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 지원과 조정을 신속하게 종료하고 시장을 조속하게 안정화하고자 사업재편기간을 비교적 짧게 설정한 것임.

그러나 최근의 공급안정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도 단기적인 위기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구조조정, 신산업 전환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함께 병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유형의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5년간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 법률에 따른 특례부여나 세제·자금지원 기간도 연장되어 안정적인 사업재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36조는 업무위탁규정의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심층조사가 신설된 점을 반영하여 심층조사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조문(제8조의2)의 위치가 이동한 점을 반영하여 정비함.

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 및 이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 적용 배제

개정안은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함(안 제24조의3).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생략) <u><신설></u>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제2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에 따라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승인기업과 거래·협력관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제2항),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해당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제3항).

[표 6]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요건

-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개정안은 승인기업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기업의 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배제하고자 함.

[표 7]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

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이에 따라 현행법 및 제도상 포상·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가점 등에 비해 효과적으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자의 시장진입 저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동반부실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부당지원행위 규제) 적용을 전면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기업에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당지원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